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 의 자 : 김영래 의원 외 3인

2. 제정이유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문제가 시급한 국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비와 양반의 고장인 우리 군의 전통을 되살리고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며,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수노인, 장수축하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수축하금 지급액, 지급원칙, 지급신청 및 방법, 제급제외
○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9조)
○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관련 부서와 합의 예산반영
나. 조례안예고 : 의견 없음

4. 관련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5. 검토의견

□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문제가 시급한 국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비와 양반의 고장인 우리 군의 전통을 되살리고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며,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 장수수당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기준일, 지급액, 지급원칙, 환수조치와 지급 금액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주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에게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며

○ 조례 제5조 지급원칙에 있어서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 99세가 되는 백수로 하고 지급기준일이 2개월 남은 때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특히 부칙 제2조에 제5조의 지급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본 조례 시행 첫해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만99세 이상은 만99세로 보고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